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식 개최 사재기 도서 베스트셀러 집계 제외 · 건전유통감시인 제도 도입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와 한국출판인회의(회장 박은주)는 유통·작가·소비자 단체 대표 등과 함께 지난 10월 29일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율 협약식은 올해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 파문으로 흥역을 치른 출판계가 자율협약을 통해 자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라 추진됐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14개 출판·유통·소비자 단체 참가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 한국출판인회의(회장 박은주), 출판유통심의위원회(위원장 윤철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박대준),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회장 정해운), (주)교보문고(대표이사 허정도), (주)영풍문고(대표이사 장병택), (주)서울문고(대표이사 김전식), (주)예스24(대표이사 김기호),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조유식), (주)인터파크(대표이사 김동업),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 등 국내 출판계를 대표하는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은주 한국출판인회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출판계의 건강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과당경쟁, 책 사재기 문제 등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독자를 책으로부터 멀리하게 할 뿐 아니라 출판의 다양성과 품격을 떨어뜨리는 등 출판 생태계를 파괴했다”라며 “오늘 우리가 선언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이 협약은 출판의 100년대계를 염원하는 출판·유통·작가들의

굳은 의지를 상징한다. 좋은 책을 만들고, 건전한 출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판인 모두가 힘과 뜻을 모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형두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을 대신해 인사말을 대독한 최선호 부회장은 “사재기는 출판계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근절을 막기는 쉽지 않았다. 이번 협약은 출판산업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베스트셀러 집계와 발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책 읽는 사회 조성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모쪼록 오늘 협약과 이로 인한 실천으로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우리 사회가 책 읽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자율 협약은 양서 출판, 책 읽는 문화 정착, 도서정 가제 준수, 책 사재기 근절 등 책 읽는 사회의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율협약으로 2010년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협약안은 지난 2010년도 협약을 기초로 더욱 강화된 자정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베스트셀러 1인 1권으로 집계

협약의 주요 골자는 출판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결할 경우 출판단체, 출판사, 서점, 작가,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별로 자율규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건전한 출판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베스트셀러 집계 발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택된 ‘베스트셀러 집계·발표 가이드라인’은 ▲구매자 1인이 동일 도서를 반복 구매 및 2권 이상 구매할 경우 1권만 집계하고 ▲개인 구매량을 우선으로 집계하며 ▲기관 및 단체 등 조직이 구매한 경우와 조직 구성원 등 개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판매량의 20% 내를 집계하되 해당도서가 조직 구성원 등 개인에게 배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계에서 제외하며 ▲서점에 납품하는 도서는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 소속 협회 회원 박탈·해당도서 목록서 즉각 제외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자율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출판사는 소속 협회의 회원 자격이 박탈되고, 해당 도서는 서

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즉각 제외된다. 또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지해야 한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위반 사실을 기타 출판 관련 단체에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위반 출판사의 도서는 정부 및 공공부문 추천도서 선정 시 1년 이상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다. 또한 ‘건전유통감시인’ 제도도 도입해 출판 유통업계가 유통과정에서 불건전 유통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판단체는 책 읽는 문화 정착을 위해 대중매체 등을 통한 다양한 도서 정보 제공 및 독서지도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확산하는데 노력하기로 했으며, 출판사나 저자가 제23조 1항을 위반해 상대방에게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해지나 배상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출판권 설정 계약서 등에 포함하도록 회원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원안에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를 두고 23인으로 구성된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재기 및 도서정가제 신고 접수 등을 하고 있다. ◎



1.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식’ 전경 2. 출판계 인사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3. 서명을 마친 후 국내출판 주요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펼쳐 보이고 있다.